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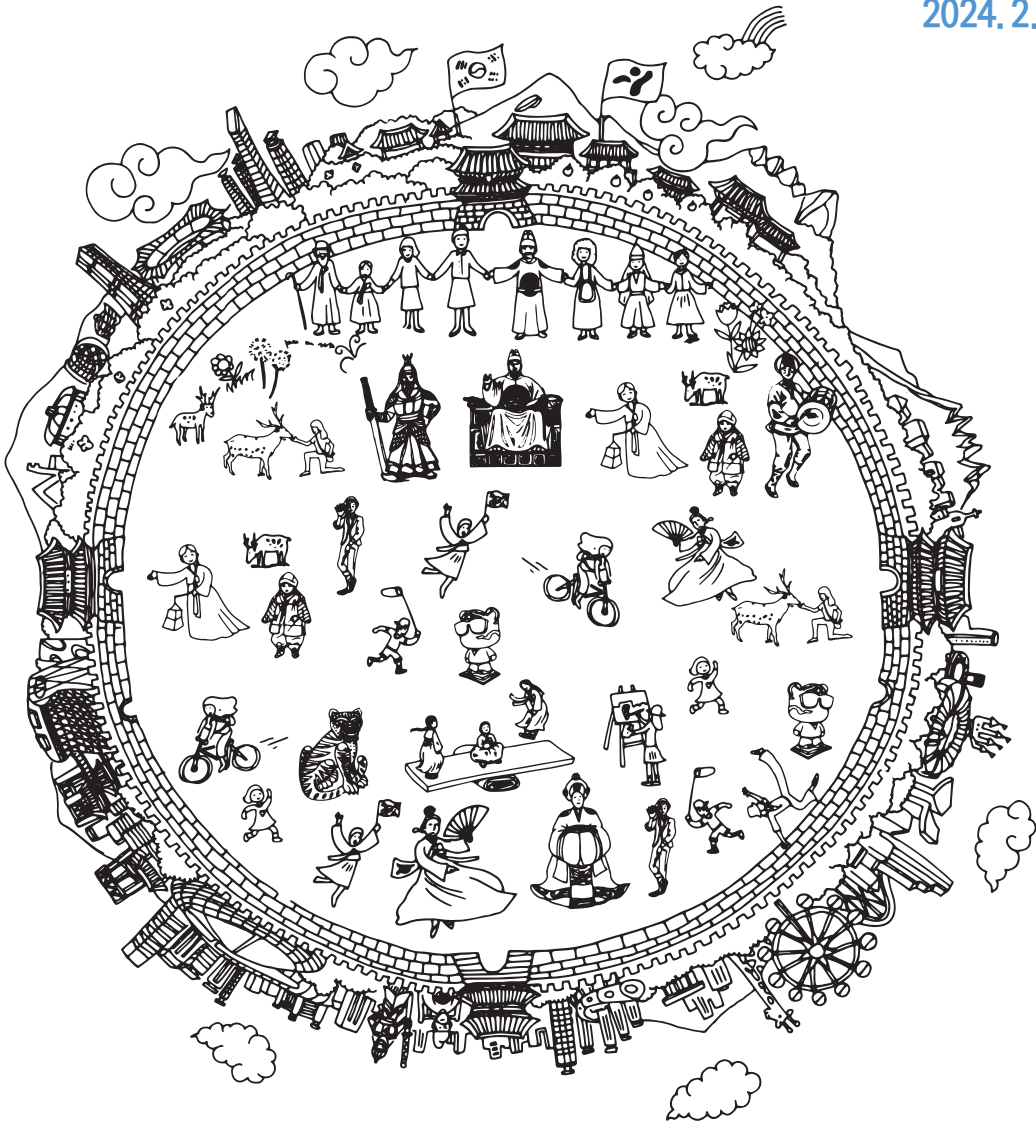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http://www.seoul.go.kr)

제3955호  
2024. 2. 26.(월)



## 목 차

### ◆ 정 정

|                                                |   |
|------------------------------------------------|---|
| 제8650호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정정) ..... | 2 |
|------------------------------------------------|---|

## 정 정

### ◆ 서울특별시조례 제8650호

####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정정)

서울시보 제3861호(2023. 3. 27.)에 게재된 서울특별시조례 제8650호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중 정정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공포안을 정정합니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2024년 2월 26일

### ◆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삭제한다.

제2조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2호와 제3호로 한다.

제2조제3호의 라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마목부터 사목까지로 하고, 같은 조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마목(현행 라목)의 “노인”을 “사람”으로 한다.

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도서관의 구분) ① 도서관은 그 설립·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립 도서관”이란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2. “사립 도서관”이란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② 도서관은 그 설립목적 및 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공도서관”이란 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하며, 아래 각 목의 시설을 포함한다.

가.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작은도서관

나. 어린이,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족 등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2. 대학·학교·전문도서관 등 그 밖의 도서관은 법 제4조제2항 각 호를 따른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지식정보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지식정보취약계층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지식정보격차 해소 등 독서 문화 활동 증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도서관에 지식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사업, 자료제작·구입, 시설개선, 기기구입 등을 위한 재정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1조2(이재민) 제3호 가목, 나목, 제4호 가목에 따른 재난 이재민의 심리회복을 위한 도서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으로 주거시설의 상실·침수 등 피해를 입은 자

2.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주거시설로부터 격리 또는 출입통제의 조치를 받은 자

3. 감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해 주거시설로부터 격리 또는 출입통제의 조치를 받은 자의 동거 가족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도서지원 시 이재민 도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예산, 지원대상 및 지원도서에 대한 세부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제2항 중 "법 제15조"를 "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으로 하고, "수립하여야 한다."를 "수립하고 이를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전년도 도서관발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4조에 따른 도서관발전종합계획과의 부합도

2. 도서관발전 시행계획의 이행 충실도

3. 도서관발전 시행계획의 목표 달성도

④ 시장은 다음 연도 도서관발전 시행계획 수립 시 제3항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28조제3호 중 “공공도서관”을 “그 밖의 공공도서관과”으로 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공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등) ①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운영하려는 기관 및 자치구(이하 “설립자”)는 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절차와 요건을 갖추어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설립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을 경우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심의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공도서관의 설립자가 해당 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신고하고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법 제38조에 근거하여 공립 공공도서관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시정요구·운영정지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공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취소 또는 운영정지 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법 제50조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등록 공공도서관의 관리·운영 현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의 제목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의 운영 지원)” 을 “(공공도서관 등의 운영 지원)”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을 “공공도서관”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작은도서관” 을 “학교도서관” 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평가하고” 를 “매년 평가하여야 하며,” 로 한다.

제3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따라 매년 공공기관 운영평가계획을 수립하고 등록된 공공도서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3조를 삭제한다.

제34조를 삭제한다.

제40조를 삭제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lt;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gt;

## 1. 개정이유

- 「도서관법」 및 동법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규범 체계를 정비함과 동시에, 사회적 취약계층의 독서문화 향유 기회를 보장하고 공립 공공도서관에 대한 관리·감독 등 시장의 책무를 강화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상위법령에 맞추어 용어 및 개념을 정비함.(제2조 및 제2조의2).
- 나. 지식정보취약계층에 대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지원 내용을 제1장 총칙에 신설함(제4조의2)
- 다. 도서관발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제출에 관한 사항을 보완·신설함.(제5조제2항부터 제4항).
- 라. 공공도서관에 작은도서관이 포함되므로, 작은도서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대상을 "그 밖의 공공도서관"으로 명시함(제28조제3호).
- 마. 공립 공공도서관에 대한 등록 등 관리의무를 신설함(제30조의2).
- 바. 시장의 공공도서관 운영 평가 및 평가 계획수립 의무를 명시함(제32조).



|       |  |
|-------|--|
| 기관의 장 |  |
| 선     |  |
| 람     |  |

|        |  |  |  |  |  |  |  |  |  |
|--------|--|--|--|--|--|--|--|--|--|
| 공<br>람 |  |  |  |  |  |  |  |  |  |
|        |  |  |  |  |  |  |  |  |  |